

2023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원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참여 공공연구기관(19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 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12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구 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초 기업파견 지원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지원* 3년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6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 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강소기업 100,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으뜸기업 선정기업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나. 신청 및 평가방법

○ (신청·접수기간) '23. 4. 10(월) ~ '23. 12. 31(일)까지 상시 접수

○ (선정절차)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평가기준)

- (서면평가) 사업지표 7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
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 가점항목

분야	가점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공통가점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공통가점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최대 5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사업별 가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	3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라. 지원제외 사항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참조

마.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을 작성하고,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 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지원기업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 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바.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매월 신청마감일의 익일로 기재 ** (요약문,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	○		시스템 직접 입력
	요약문 본문2 본문1		○	www.smttech.go.kr에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 업로드
②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 * 설립 3년 미만기업(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은 미제출 가능	○		스캔본 업로드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	
④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시스템 동의 시 직인/서명 제출 생략가능
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⑥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⑦	우대가점 증빙서류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종평가확인서 등)		○	스캔본 업로드
		최근 3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창장 등)		○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2. 기타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졸업제 미적용 사업)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③ 본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

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서 확인가능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정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㉑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㉒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㉓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3211-5609)

⑦ 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채용지원 '23.6.1 예정, 파견지원은 건 별 협약시작일 상이) 전까지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 단,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를 제출 후 인정받은 경우 예외

4. 온라인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제출 필수서류의 미제출 및 서류 오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제외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접수 완료 후 수정할 경우, 수정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 상태를 확인 필요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가능)
- ☞ 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문의처

구 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 287-7341, 7386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044) 300-0847, 0842, 0852